

#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9월 1일 한선재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9월 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선재 의원)

### □ 제안이유

-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부천시는 2004. 4. 12일부터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난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민행정 불신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행보다 신고포상금을 감액 조정하고 지급제한 한도액도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을 현행 3~3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조정(안 제2조 별표)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은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목욕탕, 숙박업소중 객실 20실이하는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는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은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은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과태료의 처분통지 서식의 변경 및 전산고지방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 신설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3항)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을 현행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
- 불합리한 과태료 처리에 관한 서식 조정 및 신설(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본 조례가 제정된 후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현황과 포상금 대상자 지급내역은?	○ 현재까지 신고현황으로는 총 26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35건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4천 4백 만원이 부과되었고 포상금은 1천5백6십만원이 지급되었으며 4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신고건수는 시행직후인 5월달에 가장 많았으며 8월달에는 없었습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신고한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인지 아니면 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 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전문 신고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고한 사람 중에 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람이 얼마까지 받았는지?	○ 최고 한도액까지 지급된 바 있습니다.
○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는 과태료를 잘 납부합니까?	○ 납부를 하는데도 있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납부를 미루는데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 현재 부과해서 징수율은 약 60% 정도 됩니다.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91호
의결 연월일	2004. 9. 9

제안년월일 : 2004년 9월 8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중에서 “마”항 (3)호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기준에 도·소매업 경영사업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 기준에 의거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의 “마”항 (3)호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과다하여 전문 신고꾼들이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 포상금액을 하향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

## 2. 주요골자

-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의 “마”항 (3)호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 “3만원”을 “1만원”으로 수정(안 제2조 및 별표)

#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마항 (3)호의 포상금액 “3만원”을 “1만원”으로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제2조관련)</p> <p>마.</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h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포상금액</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1차 위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 위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 위반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 곱미터 미만 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u>7</u></td> </tr> </tbody> </table>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 곱미터 미만 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u>7</u>	<p>[별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제2조관련)</p> <p>마.</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h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포상금액</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1차 위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 위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 위반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과 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과 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과 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u>3</u></td> </tr> </tbody> </table>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현행과 같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u>3</u>	<p>[별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제2조관련)</p> <p>마.</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h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포상금액</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1차 위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 위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 위반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개정안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 과 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 과 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 과 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u>1</u></td> </tr> </tbody> </table>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과 같 음)	(개 정 안 과 같 음)	(개 정 안 과 같 음)	<u>1</u>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 곱미터 미만 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u>7</u>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현행과 같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u>3</u>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과 같 음)	(개 정 안 과 같 음)	(개 정 안 과 같 음)	<u>1</u>																																								

#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1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114회)

제안년월일 2004. 09. 01

제안자 한선재 의원 등 12인

## □ 제안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부천시는 2004. 4. 12일부터 1회용품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난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민행정 불신 초래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행보다 신고포상금을 감액 조정하고 지급제한 한도액도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을 현행 3~3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조정(안 제2조 별표)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은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목욕탕, 숙박업소중 객실 20실이하는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는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은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은 현행보다 50%수준으로 조정

- 과태료의 처분통지 서식의 변경 및 전산고지방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통지 신설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3항)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을 현행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함 (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
  
- 불합리한 과태료처리에 관한 서식 조정 및 신설(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 제13호 서식)



[수정안 포함]

##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동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월평균 10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1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3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1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	50	10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1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1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담당공무원의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p>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	납부장소	
	원		지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b>부천시장</b>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 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 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p>							
<b>부 천 시 장 인</b>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b>부천시장</b>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